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187

발의연월일: 2025. 2. 14.

발 의 자:김영진·박희승·조승래

이재정 • 한병도 • 박민규

서삼석 · 채현일 · 강유정

임호선 · 허 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대납할 수 있음.

그러나 2015년 이후 지난 10년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대납한 출자금만 12조 6,984억원으로 대규모의 국제금융기구출자금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부의 판단에 의해 지출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3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 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86호)의 의결을 전제 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 대납(代納)하는 출자금의 한도액 제34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7.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 대납하는 출자금의 해당 연도 실적 및 다음 연도 계획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예산총칙 및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3
호 및 제34조제17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	제20조(예산총칙) ①		
는 세입세출예산 · 계속비 · 명			
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			
정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		
	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에 따라 한국은행이 국제금융		
	기구에 대납(代納)하는 출자		
	금의 한도액		
<u>3.</u> (생 략)	<u>4.</u>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			
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u><신 설></u>	17.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		
	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에 따라 한국은행이 국제금융		
	기구에 대납하는 출자금의 해		

<u>당 연도 실적 및 다음 연도</u> <u>계획</u>